

# 연구윤리규정

2008.01.01. 제정  
2021.08.23. 개정  
2022.02.22.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스트레스 研九)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연구논문을 투고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연구부정행위)

-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 제4조(저자권)

- 저자의 책임과 의무
  -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고 저자 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연구대상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대상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포함하지 않는다. 단, 과학 정보로서 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 때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출판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2. 저자 결정 기준

1) 저자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2) 저자 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저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기여도를 표기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간행위원장, 간행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간행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연구자의 윤리교육
-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물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1. 제보자는 간행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2. 간행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4. 학회의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나, 학회는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1. 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한다.
2.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 피조사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첨부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시 심의 절차를 반복한다.
6. 위원장은 제11조 5항에 따른 재심 청구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절차를 논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문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문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